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나4911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오

담당변호사 김세일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9. 8.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5074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027,661원 및 그중 107,969,237원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원가 167,841,810원, 월 리스료 2,698,800원(1회차는 2,772,770원), 리스기간 60개월, 적용금리 연 8.0434%, 연체이율 연 2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오토리스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2019. 9. 2. 당일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201,410,172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E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 8. 2.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렌탈약관 제13조, 시설대여(리스)약관 제21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은 2022. 11. 1. 기준 합계 119,027,661원이고, 그중 원금은 107,969,237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2022. 11. 1. 기준) 119,027,661원 및 그중 원금에 해당하는 107,969,23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2019. 12. 18. 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함으로써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2. 18.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사실, E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2. 8. 2.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은 채무 총액과 변제기, 월 납부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새로운 채무의 발생가능성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E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F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 F 모두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한 바 있으나(피고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F는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는 이상 E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거나 피고의 사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한혜진, 판사 전유상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으나, 제1심 진행 중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가 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 고소취하서 제출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